[붙임 1]

□ 제한 사항(정부 포상지침: 참고)

○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☞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☎ 02-3150-1960~61

-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☞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☎ 032-510-0772

- 최근 2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'임원' 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(「사업상 등기부 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)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- 다만, 상기 가)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☞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☎044-200-4127

-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☞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☎ 044-203-7537
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

감사원·검·경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재판 계류,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[붙임 2]

해외 한국문화 홍보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

(피추천인 작성용)

□ 대상자

성　　명		주민등록번호	
주　　소			

□ 동의내용

위 본인은 해외 한국문화 홍보 유공자 표창 후보자로 추천됨을 동의하며, 추천기관 및 관련기관에서

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하는 것

② 범죄경력 조회 등 '정부포상업무지침'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

③ 공개검증을 위한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

④ 표창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, 그 내용이 추천기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,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15.　.　.

성명　　(서명)

[붙임 4]

공 적 조 서

(1) 성 명	한자 (원명)		
(2) 주민등록 번 호		(3) 군 번 (군인의 경우)	
(4) 본 적 (국 적)			
(5) 주 소			
(6) 직 업		(7) 소 속	
(8) 직 위		(9) 등 급 (직급·계급)	(10) 근무기간 (수공기간)
(11) 공적요지 (50자 내외)		(12) 공적 분야코드	
(13) 추천훈격		(14) 추천순위	1
조 사 자			
(15) 소 속		(16) 직 위	
(17) 직 급		(18) 성 명	
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5 년 월 일

추 천 관 직 위 성명 (인)

주 요 학 력 및 경 력			
(19) 년 월 일	(20) 이 력	(21) 년 월 일	(22) 이 력
과거 포상기록(훈장 · 포장 · 표창별로 기록)			
(23) 년 월 일	(24) 내 용	(25) 년 월 일	(26) 내 용
(27) 공 적 사 항			

반드시 2장 이상 작성

(글자크기 12p, 장평 100, 자간 0, 글꼴 신명조로 작성)

공 적 사 항

*** 공적조서 작성요령**

❍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「수여증명서」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**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**함

- **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**하여 기재
- 특히, **공적내용 작성 시 공간정보 발전 기여사항을 중점 작성**
-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

  * **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**

❍ 공적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가 본인의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

❍ **추천훈격란은 '장관표창'으로만 기재**하며, 조사자는 담당 직원, 추천자는 재외 한국문화원장 또는 문화홍보관